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68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부승찬 · 문진석 · 박선원
한준호 · 문대림 · 장철민
박정현 · 김문수 · 김한규
안태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2조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단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복수국적자 개인의 여건이나 법적·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는 다소 촉박한 기간임. 또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법적·행정적 절차에 능숙하지 못할 수 있기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사전에 그 이행에 대한 안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바, 국적선택의무의 이행 확보와 복수국적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에 대한 사

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병역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함),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만 20세가 되기”를 “20세가 되기”로, “만 22세가”를 “24세가”로, “만 20세가 된”을 “20세가 된”으로, “2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의무를 가지는 복수국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를 가진다는 사실
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
3. 해당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가지는 경우
그 이행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선택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무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u>만 65세</u>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생략) ③ (생략)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65세</u> ----- -----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u>만 20세가 되기</u>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u>만 22세가 되기 전까지</u> , <u>만 20세가 된</u>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u>20세가 되기</u> ----- ----- <u>24세</u> <u>가</u> ----- <u>20세가 된</u> -----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4년-----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의무를 가지는 복수국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를 가진다는 사실

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

3. 해당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가지는 경우 그 이행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선택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